

투자자문업 · 투자일임업 등록(변경등록)신청서

1. 상호 및 본점의 명칭 · 소재지

■ **첨부서류**

- 1-1. 정관(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) 1부
- 1-2. 법인등기부등본(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) 1부
- 1-3. 발기인총회,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 설립 또는 등록신청의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

2. 대표자 및 임원

임원수 : 명(상근: 명, 비상근: 명)

직위	성명	주민등록번호	소유주식수 (비율)	주요 경력	상근 여부	담당 업무	전문인력 여부	임원자격 적합여부

기재상의 주의

- 1. 임원자격은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.

■ **첨부서류**

- 2-1.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(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) 각 1부
- 2-2.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

3.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

■ **첨부서류**

- 3-1. 등록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영위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(법 제21조에 따른 변경등록의 경우, 종전에 영위하던 등록업무 단위와 추가하는 등록업무를 구별하여 각각 기재한다.)
- 3-2.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등록의 경우, 종전 등록업무에 관한 등록확인서 1부
- 3-3. 투자자문 · 일임계약 권유문서, 투자자문 · 일임계약서, 투자일임보고서 양식 각 1부

4. 재무에 관한 사항

■ **첨부서류**

- 4-1.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(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,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) 1부

※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4-1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5.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

-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 등 전문인력의 명단 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요경력, 전문자격내용 등)

■ 첨부서류

- 5-1.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(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) 및 자격확인서류 각 1부

6. 대주주나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에 관한 사항

■ 첨부서류

- 6-1. 등록신청일(등록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등록신청이나 경영금융투자업자의 등록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) 현재 대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 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1부
- 6-2. 대주주나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- 6-3. 외국인투자인가서(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) 사본 1부

7.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

■ 첨부서류

- 7-1.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·평가·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부
- 7-2. 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1부
- 7-3.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

8. 그 밖의 기재사항

■ 첨부서류

- 8-1.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(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) 사본 1부
- 8-2.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
- 8-3.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

※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,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
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리인)

서명 또는 인

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